

「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2. . .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구성원의 성별 균형 조항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과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선언적 조문을 명시적 조문으로 변경하고,
-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일부 조문 변경

「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”를 “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협의회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<u>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	제6조(협의회 구성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<u>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
제7조(임기) ① (생략) ② 위촉직 위원의 <u>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7조(임기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<u>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.